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1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28일

발 의 자: 이종환,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중화,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시민들은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각종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기 어렵고,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도 개개인의 사정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마을세무사나 마을번호사 제도는 이미 정착되었지만, 마을행정사는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마을행정사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마을행정사의 역할, 위촉과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마을행정사의 상담대상과 방법, 결과 처리, 수당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무료 행정상담(이하 “행정상담”이라 한다)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분석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위촉 등)	△	위촉장 수여식(대판료, 현수막, 위촉장 제작 등), 마을행정사 상담료(수당), 표창제작 비용(다만 소액)으로 판단됨 등이 발생하나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 ⇒ 다만, 기존 서울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대강을 추정할 시 총 139,500천원²⁾ (연평균 27,900천원) 소요예상
2	제9조(수당 등)		
3	제10조(표창)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본 조례안에 따른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행정국 자치행정과 등) 문의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소요비용 추정이 곤란함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다만,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³⁾(붙임 참조)을 준용하여 대강을 추정할 시 **총 139,500천원**(연평균 27,900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1) [재정소요 영향 미미]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정도의 소액만 소요(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대상 표창 시 부상없이 표창을 수여함

2) [추계기간 반영] 추계기간 5년을 반영한 금액(연평균 소요비용 × 5년)

3) [기시행 유사사례] 2025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 27,900천원
 ○ 제도의 유사성(운영방식, 상담료 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측면에서 볼 때 이를 준용할 시 소요비용 또한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다양한 지출요인(운영방식, 상담료, 수요차이 등)에 의해 실소요액과 추계액간 낮은 정합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해당 금액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2025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사업

□ 사업목적

-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 세금고민과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제공('15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인원 : 25개구 426동 296명
- 임기 : 2년(2024.1.1.~2025.12.31.)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추진방법 : 전화 등을 이용한 무료 세무상담 및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병행
- 활동분야
 - 세무상담 [국세, 지방세 모두 상담]
 - 기존 복지관에서 전통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 시행
 - (필요시 전문가로서) 시 세정분야 참여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5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	9,000천원
	- 복지관 상담료	=	2,520천원
	35,000원*2시간*3명*12회		
	- 전통시장 등 상담료	=	4,480천원
	35,000원*2시간*2명*32회		
	- 복지관 여비	=	720천원
	20,000원*3명*12회		
	- 전통시장 등 여비	=	1,280천원
	20,000원*2명*32회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	1,200천원
150,000원*4명*2회			
○ 마을세무사 만족도조사	=	8,000천원	
8,000,000원			
○ 홍보물 제작	=	9,700천원	
- 리플릿 제작	=	3,000천원	
3,000,000원			
- 포스터 제작	=	2,000천원	
2,000,000원			
- 지하철 인쇄매체 활용 홍보	=	4,700천원	
4,700,000원			

자료 : 2025년 서울시 재무국 예산설명서 발췌